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 우리펫보험 (Hi2410)





- 1. 약관 이용 가이드북
- II.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 Ⅲ. 상품 안내
- IV. 보통약관
- V. 특별약관
- VI. 별표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 (Hi2410)

년 현대해상

특별약관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이라 함은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보통약관을 말합니다.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반려동물돌봄비(상해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돌봄비(상해외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의 종류	지급금액	
반려동물돌봄비	상해로 입원하여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상해입원급여금)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1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독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돌봄비(상해입원급여급)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반 검동물돌봄비(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당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중도인출금)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견

3. 반려묘관련 특별약관

3-0 반려묘관련 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의 질병 또는 상해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묘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묘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의 소유자에 한합니다.

용 어	정 의
반려묘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를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 묘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猫) 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고양이(猫)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 이 아닙니다. 가.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10세를 초과하는 고양이(猫) 나. 판매점,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고양이(猫) 다. 특수 목적의 고양이(猫) 라.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마.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2. 지급사유 및 보상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묘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 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 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 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상비율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곱해져 보상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예시) 1차년도 이자 : 10원(100원(원금)×10%(이율)) 2차년도 이자 : 11원(110원(원금+1차년도 이자)×10%(이율))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00 【관련법규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 6. 30.>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단. 해당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진료 항목별 영수금액 포함)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 수술확인서
 - MRL.CT. 방사선 촬영 등 영상검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진(촬영일자 및 시간 필수)
 - 수익사처방전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및 반려묘의 개체식별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독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 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 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 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 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의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근부형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가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부험자가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부담한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의류비

【에시안내】 —

<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50k 【관련법규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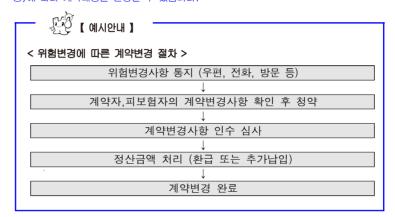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 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3 반려묘를 양도함 때
- 4.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부럴류의 증액 및 정사금액의 추가납인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부형유율(이하 '변경후 유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부형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른 보험금 삭감 예시 >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 120, 변경전 요율 : 50, 변경후 요율 : 60]

• **삭감후 보험금 = 100** = 보험금(120) × ·

변경전 요율(50)

변경후 요율(60)

제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부험자가 뚜렷하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계약 후 알림 의무) 제1 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 을 때
- 3. 계약체결의(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반려묘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 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 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 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 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LIE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 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

반려동물

특별 약관

제11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반려묘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보험료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12조 (피보형자의 범위)

-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의 소유자에 한함. 이하 '피 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 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 합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13조 (계약의 무효)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반려묘의 나이에 미탈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부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 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

통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설계 [유의사항]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 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반려묘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만 나이는 계약일 현재 반려묘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반려묘의 나이 및 견종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및 견종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반려묘(만 나이) 계산 >

생년월일 : 2021년 4월 3일, 현재(계약일) :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1월 13일 - 2021년 4월 3일 = 2년 7개월 10일 = 만 2세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23년 11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1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이 담보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차회 보험료 납입시기까지 남아있 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일시납 또는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 입하는 경우는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계약의 자동갱신)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 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 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반려묘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④ 갱시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시계약의 보험기간 종 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 LICt.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 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3세의 반려묘가 3년만기로 2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6세, 9세, 12세, 15세, 18세

- ⇒ 18세 갱신시점에서는 2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2 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⑥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약관

반려동물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해당 반려묘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13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 ③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용어해설 】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1조(계약의 성립) 및 제18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 정된 피보험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습니다

- ④ 피부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증력히 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해지된 날부터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 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 용어해설 】 -

< 강제진행과 당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 원의 결정
-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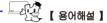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통 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 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 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 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 제5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 【 유의사항 】 -

CF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통약 관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약관

상해

반려동물

특별 약관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피보험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용어해설 】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 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25조 (준용규정)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도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8조 (계약의 소멸)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려묘 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 반려묘 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3-1-1 반려묘입원의료비Ⅱ(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묘입원의료비보험금(이하 "입원의료비보험금"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입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 도액을 입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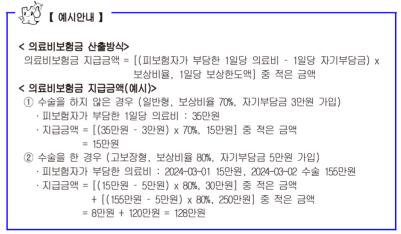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입원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통원의료비보험금과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208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중 택1	여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1,000만원
고보장형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5만원 중 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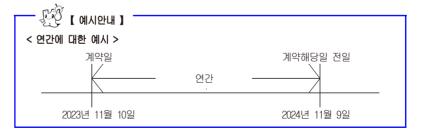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30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31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묘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관련법규 】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강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 마
- 9.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묘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 의 질병
-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묘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묘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려묘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홈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FRVF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1-2 반려묘통원의료비Ⅱ(갱신형)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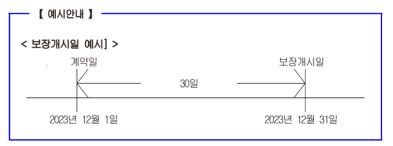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묘통원의료비보험금"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 도액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한도로 합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입원의료비보험금와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크인영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7인권/3인권 중 택1	여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언건} 1,000만원
고보장형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75만원 중 택1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I HHOLKIN I

<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예시)>

- 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형, 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35만원
 - ·지급금액 = [(35만원 3만원) x 7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 ② 수술을 한 경우 (고보장형,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24-03-01 15만원, 2024-03-02 수술 155만원
 - ·지급금액 = [(15만원 5만원) x 80%, 30만원] 중 적은 금액
 - + [(155만원 5만원) x 80%,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8만원 + 120만원 = 128만원

특별 약관

산해

반려동물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묘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강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마
- 9.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묘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 의 질병
 -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묘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당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 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류행위로 인한 비용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묘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려묘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제5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동물병원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2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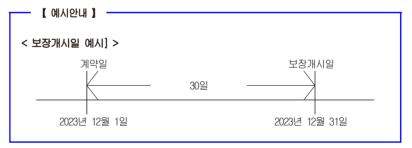
- 반려묘 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 반려묘 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3-2-1 반려묘입원의료비환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3-1-1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이하 '반려묘입원의료비비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묘 입원의료비를 반려묘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3-2-1 반 려묘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3-1 반려묘의료비॥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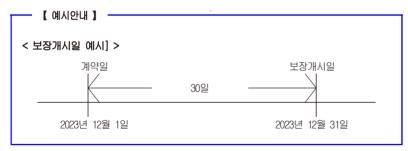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2-2 반려묘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3-1-2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이하 '반려묘통원의료비비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항) 및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묘통원의료비를 반려묘통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3-2-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3-2-1 반려묘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3 반려묘사망위로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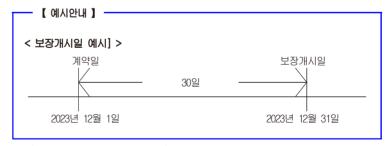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 반려묘 사망위로금	반려묘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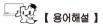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묘를 범죄했위, 경주, 수색, 폭약탁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한 으로써 발생한 소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핵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이 계약의 반려묘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20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반려묘사망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안락사의 경우 동물병원에 서 발급한 소견서 등)

- 3.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막하다



Signal (관련법규)

- ※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 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 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 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 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약과

반려동물

특별 약관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 우리펫보험 (Hi2410)





- 1. 약관 이용 가이드북
- II.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 Ⅲ. 상품 안내
- IV. 보통약관
- V. 특별약관
- VI. 별표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 (Hi2410)

년 현대해상

특별약관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이라 함은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보통약관을 말합니다.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반려동물돌봄비(상해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돌봄비(상해외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반려동물돌봄비	상해로 입원하여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상해입원급여금)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1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 합니다.

【 유의사항 】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독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함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반려동물돌봄비(상해입원급여급)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반 검동물돌봄비(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당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중도인출금) 및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견

2. 반려견관련 특별약관

2-0 반려견관련 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질병 또는 상해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견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견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소유자에 한합니다.

용 어	정 의
반려견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 견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개(犬)를 말 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개(犬)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 다. 가.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10세를 초과하는 개(犬) 나. 판매점,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개(犬) 다.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 목적의 개(犬)(단, 맹도 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라.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犬) 마.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개(犬)

2. 지급사유 및 보상관련 용어

용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견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 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 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 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상비율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강한 금액에 대해 곱해져 보상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1차년도 이자 : 10원(100원(원금)×10%(이율)) 2차년도 이자 : 11원(110원(원금+1차년도 이자)×10%(이율))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00 【관련법규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2005 6 30 >
-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진료 항목별 영수금액 포함), 동물병원 진료기록 부. 수술확인서 X-ray 등 방사선 촬영하는 경우 해당사진(촬영일자 및 시간 필수)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및 반려견의 개체식별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S [관련법규]

- ※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 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 · 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 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 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 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LIC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분당)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부담한	× -	
의료비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예시안내 】 -

<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조 (계약저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변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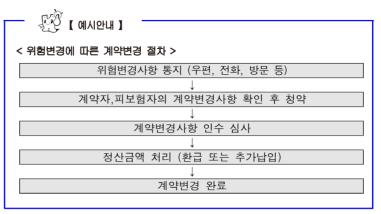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3. 반려견을 양도할 때
 - 4.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 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른 보험금 삭감 예시 >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 120, 변경전 요율 : 50, 변경후 요율 : 60]

• **삭감후 보험금 = 100** = 보험금(120) × 변경**전** 요율(50) 변경후 요율(60)

상해

약과

반려동물

기타 특별 약과

제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안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 을 때
 -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반려견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 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 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한 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 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 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LIEF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 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반려견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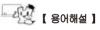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보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의 소유자에 한함. 이하 '피 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 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 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 합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13조 (계약의 무효)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반려견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부헌종목
 - 2 부헌기가
 -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 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 통약관 제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 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반려견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반려견의 나이 및 견종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및 견종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 예시안내 】

< 반려견(만 나이) 계산 >

생년월일 : 2021년 4월 3일, 현재(계약일) :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1월 13일 - 2021년 4월 3일 = 2년 7개월 10일 = 만 2세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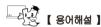
계약일: 2023년 11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1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이 담보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차회 보험료 납입시기까지 남아있 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일시납 또는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 입하는 경우는 미경과부험료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계약의 자동갱신)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 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 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반려견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부혈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부혈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부혈기간 종 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함 LICE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 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3세의 반려견이 3년만기로 2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6세, 9세, 12세, 15세, 18세

- ⇒ 18세 갱신시점에서는 2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짧아 2 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⑥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Cł.

약과

상해

반려동물

특별 약관

- 1.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해당 반려견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0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13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1. 납입최고(목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 ③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 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 의 이자를 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 정된 피보험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 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해지된 날부터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 용어해설 】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

-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 원의 결정
-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 제5항 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2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 【 유의사항 】

Cł. -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보통약 관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피보험자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 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25조 (준용규정)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중도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8조 (계약의 소멸)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 반려견의료비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려견 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 반려견 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2-1-1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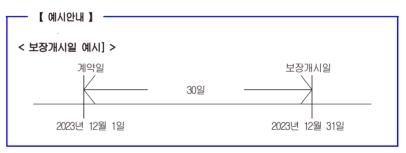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 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 검견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입원의료비보 험금(이하 "입원의료비보험금" 라 합니다.)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입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 도액을 입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한도로 합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입원의료비 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통원의료비보험금와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중 택1	연간 1,000만원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고보장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5만원 중 택1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ġ 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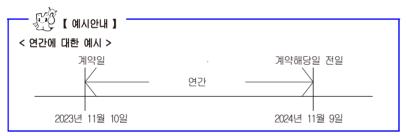
[예시안내]

<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예시)>

- 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형, 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35만원
 - ·지급금액 = [(35만원 3만원) x 7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 15만원
- ② 수술을 한 경우 (고보장형, 보상비율 9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22-10-01 13만원, 2022-10-02 수술 153만원
- ·지급금액 = [(13만원 3만원) x 90%, 30만원] 중 적은 금액
 - + [(153만원 3만원) x 90%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9만원 + 135만원 = 144만원
-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견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마
- 9.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견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 의 질병
-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심장사상충)감염증, 광견병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견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 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인트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견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2.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려견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1-2 반려견통원의료비 || (갱신형)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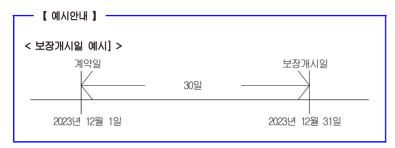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 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 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견통원의료비보험금 (이하 "통원의료비보험금"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 도액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하도로 합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입원의료비보험금와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015	여가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고보장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000만원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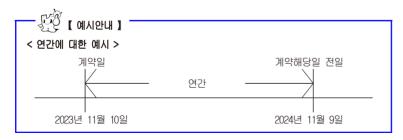
【 예시안내 】

<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1일당 보상하도액] 중 적은 금액

<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예시)>

- 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형, 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35만원
 - ·지급금액 = [(35만원 3만원) x 7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 ② 수술을 한 경우 (고보장형, 보상비율 9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22-10-01 13만원, 2022-10-02 수술 153만원
 - ·지급금액 = [(13만원 3만원) x 90%, 30만원] 중 적은 금액
 - + [(153만원 3만원) x 90%,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9만원 + 135만원 = 144만원
-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견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당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견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강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9.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견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 의 질병
- :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라리아(심장사상충)감염증, 광견병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견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 요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18.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인트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견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 병 또는 상해
 - 2.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려견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한
 - 3. 신경(神經) 차단(NFRVF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제5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동물병원에 입실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수의사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동물병원에 입실하지 않고 내원하여 수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2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 보장 특별약과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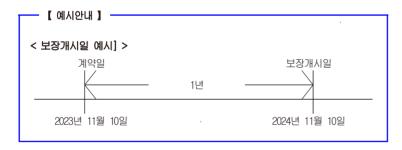
- 반려견 입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
- 반려견 통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

2-2-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 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1 반려견입원의료비미(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 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 입원 의료비를 반려견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입원의료비Ⅱ(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2-2 반려견통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2-1 반려견의료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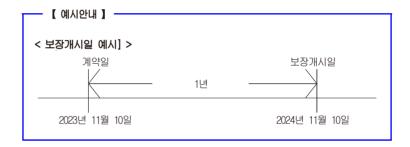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2-2 반려견통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 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2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 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통원의 료비를 반려견통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2-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슬관절,고관절 탈구)(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3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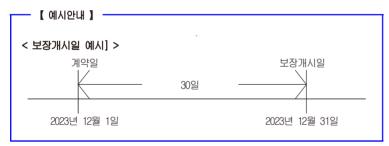
기타 특별 약관 반려견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려견 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 반려견 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2-3-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1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을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 입원의료비를 반려견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3-2 반 려견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2-1 반려견의료비॥ (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입원의료비॥(갱

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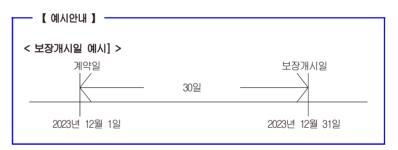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3-2 반려견통원의료비환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2-1 반려견의료 비미(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2-1-2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제3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견통원의료비를 반려견통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2-3-1 반려견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2-1 반려견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견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4 반려견사망위로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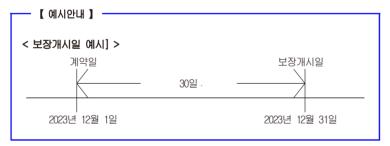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반려견 사망위로금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LIDE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찍는 것 또는 방사는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 마



4년 【용어해설】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이 계약의 반려견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독려드립니다

제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20조(보험료의 납 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반려견사망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안락사의 경우 동물병원에 서 발급한 소견서 등)
 - 3.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 의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500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 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 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 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 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5 반려견배상책임 ||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 한함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배상책임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견에 의해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해당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 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상 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이라 항은 타인과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을 말 합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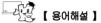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은 제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특별약 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부현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항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 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 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소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 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7.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반려견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가입 반려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15. 가입 반려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징벌적 손해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손해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대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예시안내 】 —

<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계약1= 48 =80× 계약1(60) 계약1(60)+계약2(40) •계약2= 32 =80× 계약1(60)+계약2(40)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미리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1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피해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금액 등이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사는 피 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대하는 등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

행합니다.

- 【 용어해설 】

< 보상책임을 지는 하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 (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부형자가 손해배상을 할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 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4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기타 특별 약관

- 【 관련법규 】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15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 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

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손해가 발생 후에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7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7조 (양도)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반려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반려견을 양 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부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부험자
-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 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과 제41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9조 (조사)

- ① 회사는 반려견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제20조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에서 정한 반려견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장보험료를 해당 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

<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22조 (특약의 소멸)

- 이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2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견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반려동물

기타 특별 약관